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조례안상정

(조례 9건)

거창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8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2 ~ 8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 ~ 86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2 ~ 87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
2012 ~ 8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2012 ~ 89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2 ~ 9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2 ~ 9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2 ~ 97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4
----------	-----------

제출일자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제6호)

○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 제4조제1항제3호

나.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현행 : 월 3만원 ⇒ 변경 : 월 5만원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1) 자 ⇒ 사람

(2) ~한 때 ⇒ ~한 경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15백만원(2013년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0. 29. ~ 10.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4조제1항제3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 본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몰군경의 유족 : 월 5만원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b>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b>자</b>를 말한다.</p>	<p><b>제2조(정의)</b>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b>4조제1항</b> <b>제3호</b>----- -----<b>사람을</b>-----</p>
<p><b>제8조(공공시설 이용지원)</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자</b>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p> <p>1. ~ 2. (생략)</p> <p>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b>자</b>의 활동을 보조하는 <b>자</b> 1명</p>	<p><b>제8조(공공시설 이용지원)</b> ----- -----<b>사람</b>-----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p>3. ----- -----<b>사람</b>-----<b>사람</b>-----</p>
<p><b>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b>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b>자</b>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b>자</b>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b>1. 명예수당</b></p> <p><b>가. 참전유공자 : 월 5만원</b></p> <p><b>나. 전몰군경의 유족 : 월 3만원</b></p> <p>2. 사망위로금 : 30만원</p>	<p><b>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b> ① --- ----- -----<b>사람</b>-----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1. ----- 가. ----- <b>나. 전몰군경의 유족 : 월 5만원</b> 2.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u>자</u>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 ----- <u>사람은</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u>때</u>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3조(지급대장 관리) ----- ----- <u>경우</u> ----- ----- -----</p>
<p>제14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생략)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u>타인</u>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p>	<p>제14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다른 사람</u> ----- -----</p>
<p>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u>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p>1. 지급대상자가 아닌 <u>자</u>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p> <p>2.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u>자</u>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u>자</u>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p>	<p>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 ----- <u>사람이</u> ----- ----- ----- 1. ----- <u>사람</u> ----- ----- 2. (현행과 같음) ② ----- ----- <u>사람이</u> ----- ----- ③ ----- ----- <u>사람이</u> ----- ----- -----</p>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5
----------	-----------

제출일자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 및 부정 지급에 대한 환수절차 규정을 두어 화장장려금 지원업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호)

○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제2호

#### 나. 화장장려금 신청기한를 정함(안 제6조제1항)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다. 환수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 (1)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통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송 등 지속적으로 독촉
- (2)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0. 29. ~ 11.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필하고”를 “마치고”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제2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u>자</u>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p> <p>6. “연고자”란 사망한 <u>자와</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u>자</u>를 말한다.</p>	<p><b>제2조(정의)</b>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사람</u>----- -----</p> <p>6. -----<u>사람과</u>----- ----- -----<u>사람을</u>-----</p>
<p><b>제3조(지원대상)</b>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p> <p>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p> <p>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u>필하고</u>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b>제3조(지원대상)</b> ----- -----</p> <p>1. ----- -----</p> <p>2. ----- -----</p> <p>3. ----- -----<u>마치고</u>----- -----</p>
<p><b>제5조(지원기준)</b> 화장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제3조제1호</u>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u>지급한다</u>.</p> <p>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u>지급한다</u>.</p>	<p><b>제5조(지원기준)</b> ----- -----</p> <p>1. <u>제3조제1호·제2호</u>----- ----- ----- ----- -----<u>지급</u>-----</p> <p>2. ----- ----- -----<u>지급</u>-----</p>

현 행	개정안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 -----<u>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u>----- ----- -----<u>사람은</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p> <p>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u>자</u>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p> <p><u>&lt;신 설&gt;</u></p>	<p>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 ----- ----- ----- ----- -----</p> <p>1. ----- -----</p> <p>2. -----<u>사람</u>----- -----</p> <p>② <u>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u></p>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input type="checkbox"/> 시체 <input type="checkbox"/> 개장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화장장려금						7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화장 장소			사망연월일	. . .	
			화 장			
			연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번호 : 거래은행 :                      예금주명 :					
읍면장 확 인	연고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읍·면장 (직인)		
	자연장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2. 시체(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자연장에 한함) 3. 통장사본						

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b>화장장려금 지급 통지서</b>				
신청인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지급액				
지급일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거 창 군 수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	사망자		신청인			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소 (소재지)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지급일	계좌번호	지급액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6
----------	-----------

제출연월일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이장에게 지역 복지도우미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이장의 기능을 행정여건에 적합하게 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장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나. 실비변상 추가 지원(안 제4조)

○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64,080천원(2013년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9.28. ~ 10.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불임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리구역 안”을 “행정리 구역”으로 “업무중”을 “업무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제3조제1항 중 “행정리발전”을 “행정리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지역 출타등”을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하고, “없을때”를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이장의 업무)</b> ① 이장은 <u>행정리 구역 안에서</u>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p> <p>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p>	<p><b>제2조(이장의 업무)</b> ① -----<u>행정리 구역</u>-----<u>업무 중</u>-----</p> <p>② ----- 각 호-----</p> <p>1. ~ 3.(현행과 같음)</p> <p>4. <u>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u></p> <p>5. <u>그 밖에</u> -----</p>
<p><b>제3조(복무)</b>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u>행정리발전을</u> 선도하여야 한다.</p> <p>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u>지득한</u>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p> <p>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u>읍면장</u>,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p>	<p><b>제3조(복무)</b> ① -----</p> <p>-----<u>행정리 발전</u>-----</p> <p>② -----</p> <p>-----<u>알게 된</u>-----</p> <p>③ -----<u>다른 지역 출타 등</u>-----<u>없을 때</u>-----</p> <p>④ -----</p> <p>-----<u>읍·면장</u>-----</p>
<p><b>제4조(실비변상)</b>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u>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b>제4조(실비변상)</b> ① -----</p> <p>-----<u>범위</u>-----</p> <p>② <u>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b>제6조(사기진작)</b>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b>제6조(사기진작)</b> -----</p> <p>-----<u>범위</u>-----</p> <p>1. ~ 5.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희망복지 지원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함에 따른 활동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4조제2항 :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64,080	64,080	64,080	64,080	64,080	320,400
	소계(a)	64,080	64,080	64,080	64,080	64,080	320,40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64,080	64,080	64,080	64,080	64,080	320,400

※ 복지도우미 수당 : 이장 267명 × 20,000원 × 12월 = 64,080,000원

### 3. 관련 의견

-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희망복지 지원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 거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7
----------	-----------

제출연월일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폐지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으로 미술장식업무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 공포(2011.11.26.)로 건축물 미술장식업무가 시·군 기초단위에서 시·도 광역단위로 일원화

나.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2012.6.28.)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절차, 사후관리, 설치금액산정 규정과 경상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군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10.02. ~ 10.2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8
----------	-----------

제출일자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군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군 관광진흥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

나. 지원제외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다. 관광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라.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제3조·제45조·제76조

나. 예산조치 : 2,000천원(2013년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9. 27. ~ 10.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제1항(관광객 유치지원)

: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89
----------	-----------

제출일자	2012. 11. 1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법 제2조제4호 ⇒ 제2조제6호

(2) 법 제108조 ⇒ 제12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1)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2) 당해 ⇒ 해당

(3)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4) 자 ⇒ 사람

(5) 지역안, 범위안 ⇒ 지역, 범위    (6) 인 ⇒ 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9.10. ~ 9.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를 “법 제126조에 따라 군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의원”을 “대의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2인”을 “1명과 2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등”을 “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장”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p> <p>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p> <p>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군수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뜻은----- 1. -----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 2. -----이란----- 3. -----이란-----</p> <p>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법 제126조에 따라 군이----- ----- --해당----- -- ② -----에 따른----- ----- 해당----- -----</p> <p>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법 제126조에 따라----- ----- ----- ----- ----- ----- ② -----각 호----- -----</p>



현 행	개 정 안
<p>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p> <p>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p> <p>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p>	<p>-----</p> <p>-----</p> <p>1. -----명-----</p> <p>2. -----</p>
<p>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p>	<p>제5조(수리계의 등록) -----</p> <p>에 따른-----경우-----</p> <p>-----</p> <p>-----</p> <p>-----</p>
<p>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p> <p>-----각 호-----</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2. (생략)</p>	<p>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p> <p>-----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8조(총회) ①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총회 및 <u>대의원</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p>	<p>제8조(총회) ① -----</p> <p>-----필요한-----</p> <p>-----명-----</p> <p>-----</p> <p>② -----대의원회-----필요한-----</p> <p>-----</p>
<p>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9조(임원) ① -----</p> <p>1명과 2명-----</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p>	<p>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p> <p>-----각 호-----</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p> <p>-----</p>

현행	개정안
<p>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u>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11조(경비의 부과)</b>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li> <li>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li> <li>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li> </ol> <p>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b>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 --범위-----</p> <p>제11조(경비의 부과) ① ----- -----에 따른 ----- ----- ----- ----- ----- ----- -----</p> <p>② -----에 따른 -----해당----- ----- ----- <u>각 호</u>----- 1. ----- 2. ----- --군 등----- -----</p> <p>3. ----- ----- -----</p> <p>③ -----에 따른----- ----- -----</p> <p>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에 따른----- ----- ----- ----- ----- -----</p> <p>② -----에 따른----- ----- ----- ----- ----- ----- -----</p>

현행	개정안
<p><b>제13조(예산 및 회계)</b>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u>지방자치단체</u>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b>1월</b>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b>제1항의 규정에 의한</b>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b>3월</b>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p>	<p><b>제13조(예산 및 회계)</b> ① ----- -----<u>군</u>----- ----- -----<u>1개월</u>----- -----</p> <p>② ----- ----- -----<u>에 따른</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3개월</u>----- ----- -----</p>
<p><b>제14조(서류의 비치)</b> 수리계장은 다음 <b>각호</b>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li> <li>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b>기타</b> 규약에서 정한 서류</li> </ol>	<p><b>제14조(서류의 비치)</b> -----<u>각 호</u> ----- ----- ----- ----- 1. ----- 2. -----<u>그 밖에</u>----- -----</p>
<p><b>제15조(수리계의 해산)</b> ① 수리계는 다음 <b>각호의 1</b>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해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b>때</b></li> <li>수해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b>규정에 의한</b> 기준에 미달된 <b>때</b></li> <li>천재·지변 <b>기타</b>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b>때</b></li> </ol> <p>② 제1항의 <b>규정에 의하여</b>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b>당해</b> 기반시설과 제14조 <b>각호</b>의 서류를 다음 <b>각호</b>에 해당하는 <b>자</b>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b>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장</b></li> <li>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li> </ol> <p>③ (생략)</p>	<p><b>제15조(수리계의 해산)</b>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u>경우</u>----- ----- ----- <u>에 따른</u>-----<u>경우</u> 3. -----<u>그 밖에</u>----- ----- -----<u>경우</u> ② -----<u>에 따라</u>----- -----<u>해당</u>-----<u>각 호</u> -----<u>각 호</u>-----<u>사람</u>----- ----- 1. -----<u>한국농어촌공사</u> <u>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장</u> 2. ----- ③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95
----------	-----------

제출연월일	2012. 12.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을 위해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제16조, 제22조)

- 주민생활지원실
  - 사무이관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과
  - 사무신설 :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 경제과
  - 사무신설 :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 업무
- 문화관광과
  - 사무이관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문화센터(⇒ 문화센터)
  - 사무이관 :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 사무이관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수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11.22. ~ 12.02.(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을 “여성복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제목,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중 “교육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제목,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중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거창 사건사업소”로 한다.

제4절 제목,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  
청소년사업소”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장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                      2. 주민생활지원실장                      가. ~ 라. (생략)                      마. <u>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                      바. (생략)  <u>&lt;신 설&gt;</u></p> <p>3. 행정과장                      가. ~ 마. (생략)  <u>&lt;신 설&gt;</u></p> <p>4. ~ 6. (생략)                      7. 경제과장                      가. ~ 마. (생략)  <u>&lt;신 설&gt;</u></p> <p>8. 문화관광과장                      가. ~ 다. (생략)  <u>라.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9. ~ 13. (생략)</p> <p>제2절 <u>교육문화센터</u></p> <p>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u>교육 및 문화예술활동</u>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스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교육문화센터</u>를 둔다.                      ② <u>교육문화센터</u>는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p> <p>제15조(소장) <u>교육문화센터</u>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여성복지</u>-----                      바. (현행과 같음)  <u>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3.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p> <p>4.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u></p> <p>8.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9. ~ 13. (현행과 같음)</p> <p>제2절 <u>문화센터</u></p> <p>제14조(설치) ① -----  <u>문화예술활동</u>-----                      -----                      -----<u>문화센터</u>-----                      ② <u>문화센터</u>-----                      -----</p> <p>제15조(소장) <u>문화센터</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교육·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16조(소관사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3절 <u>거창사건관리사업소</u></p>	<p>제3절 <u>거창사건사업소</u></p>
<p>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거창사건관리사업소</u>를 둔다.</p> <p>② <u>거창사건관리사업소</u>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p>	<p>제17조(설치) ① ----- ----- ----- ----- ----- ----- ----- ----- ----- ----- -----</p> <p><u>거창사건사업소</u>-----</p> <p>② <u>거창사건사업소</u>----- -----</p>
<p>제18조(소장) <u>거창사건관리사업소</u>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8조(소장) <u>거창사건사업소</u>----- ----- ----- -----</p>
<p>제4절 <u>시설관리사업소</u></p>	<p>제4절 <u>체육청소년사업소</u></p>
<p>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시설관리사업소</u>를 둔다.</p> <p>② <u>시설관리사업소</u>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p>	<p>제20조(설치) ① ----- ----- ----- ----- ----- ----- -----</p> <p><u>체육청소년사업소</u>-----</p> <p>② <u>체육청소년사업소</u>----- -----</p>
<p>제21조(소장) <u>시설관리사업소</u>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1조(소장) <u>체육청소년사업소</u>----- ----- -----</p>
<p>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u>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제22조(소관사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u>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li> </ol>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96
----------	-----------

제출연월일	2012. 12.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6급 : 11% 이내(현행) → 12% 이내(조정 : 증 1%)
- 7급 : 25% 이내(현행) → 27% 이내(조정 : 증 2%)
- 8급 : 23% 이내(현행) → 18% 이내(조정 : 감 5%)
- 9급 : 41% 이상(현행) → 43% 이상(조정 : 증 2%)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8명
  - 현행 :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34명, 읍33명, 면136명)
  - 조정 : 531명(본청239명, 의회8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0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5명
  - 현행 :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 조정 : 52명(본청24명, 의회3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98,429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1. 21. ~ 12. 01.(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52명”을 “6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8명”을 “641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27% 이내	18% 이내	43% 이상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5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8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55명</u>-----</p> <p>-----</p> <p>1. -----<u>641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55 (652)	280 (272)	14	125 (126)	62	63 (64)	50 (54)	38	148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570 (562)	253 (241)	11 (10)	91 (92)	29	62 (63)	34 (38)	34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31 (523)	239 (227)	8 (7)	85 (86)	25	60 (61)	30 (34)	33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2)		3	3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기능직		52 (57)	24 (27)	3 (4)	6	5	1	14 (15)	4	1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98	98	98	98	98	490
소계(a)			98	98	98	98	98	49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98	98	98	98	98	490

###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인력 확충,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증가액 : 73백여만원
  - 기본급 61백여만원, 급식비 등 12백여만원
- 물건비 증가액 : 5백여만원
  - 직급보조비 3백여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백여만원
- 이전경비 증가액 : 20백여만원
  - 성과상여금 3백여만원, 연금부담금 9백여만원, 국민건강보험금 5백여만원, 연금지급금 3백여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97
----------	-----------

제출일자	2012. 12.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2) 군 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나.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1)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 군의원,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2) 위원회는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

다.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2) 부상의 정도에 따라 2백만원 ~ 7백만원
-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라. 위로금의 환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위로금을 수령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 2천만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0. 18. ~ 11.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군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결정통보)**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
  - 가.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나.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다.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

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거창군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의 로 운 행 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사 고 처 리 행 정 관 서	담당자	
	전화번호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로운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사 실 확 인 조 사 서

의 로 운 행 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고내용 확 인 (6하 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의로운 군민 추 천 사 유			
조 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확 인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의로운 군민 인정결과 통보서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인) 귀하

### 의 로 운 군 민 인 정 신 청 내 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	
의로운 행위자 (심사 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의 로 운 군 민 인 정 결 과

심사위원회	○○○○년 제○○차 거창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	○○○○년 ○○월 ○○일			
인 정 결 과	의로운 군민 인정/불인정 여부		부상등급	
	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	제 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제 호

# 의로운 군민 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직인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
  - 가.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나.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다.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거창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